KOSHA GUIDE

B - 7 - 2015

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5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제문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희
- o 제·개정 경과
- 2008년 10월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08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1년 12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5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- 미국 서부지역 "Pacific safety code"
- 미국 동부지역 "Safety regulations" 및 "B.C maritime employer association"
- 미국 "OHSA(U.S. department of labor)
- 항만화물운송사업 노동재해방지규정(일본 노동재해방지협회)
- 선내 하역작업 주임자(일본 항만재해방지협회)
- Model safety manual supporting the portworker development programme(ILO)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 내지 제404조(항만하역작업)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(안) 제안개요

I. 제정이유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4조 제404조(항만하역작업)에 따른 컨테이너선 하역작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지침을 정함고 기술적 사항을 제공하기 위함.

II. 제정(안)의 주요내용

- 1. 이 가이드는 다음 가이드를 통합한 제정(안)임
 - B-1 컨테이너선의 하역 안전작업 지침
 - B-2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의 하역 운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 - B-3 일반부두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- 2. 이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컨테이너 하역 작업 시 작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함
 - 컨테이너의 적·양하 작업에 대해 규정함
 - 터미널의 하역 운반장비의 안전작업에 대해 규정함
 - 컨테이너 야드에서의 작업안전에 대해 규정함
 - 본선작업 시 안전에 대해 규정함
 - 부두에서의 하역장비 작업언전에 대해 규정함
- 3. 주요 수정,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목적 및 적용범위를 통합하고, 이를 수정함
 -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보완함
 - 기존 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해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, 이를 보완함

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~제404조(항만하역작업)에 따른 컨테이너선 하역작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컨테이너선 하역작업에서의 재해예방,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에서의 컨테이너 하역 유반작업, 일반부두에서의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본선작업"이라 함은 항만 내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 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나) "적하(Loading)"라 함은 부선 또는 부두 위의 컨테이너를 집어 선박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.
 - (다) "양하(Discharging)"라 함은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부선 또는 부두 위에 내려놓는 작업을 말한다.
 - (라) "컨테이너 크레인(Container crane)"이라 함은 부두안벽에 설치되어 적·양하 작업을 수행하는 컨테이너 전용 하역 크레인을 말한다.
 - (마) "스프레더(Spreader)"라 함은 컨테이너 크레인의 권상용 블록(Block) 하부에 부착되어 컨테이너를 집어 올려 하역하는 설비를 말한다.
 - (바) "로드 핀(Load pin)"이라 함은 컨테이너를 적·양하 하기위해 와이어로프 슬링(Sling)에 부착하여 컨테이너의 코너 캐스트(Corner cast)에 결속하는 하역용구를 말한다.

- (사) "백 리치(Back reach)"라 함은 컨테이너 크레인의 야드(Yard) 쪽 레일에서 야 드 측으로 돌출한 붐의 하부를 포함한 작업구역을 말한다.
- (아) "현문사다리(Accommodation ladder)"라 함은 안벽의 육상과 선박 사이를 승·하강 할 수 있는 작업자 및 본선선원의 이동통로를 말한다.
- (자) "랏싱 케이지(Lashing cage)"라 함은 랏싱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탑승하여 컨 테이너의 상단으로 이동하는 기구를 말한다.
- (차) "랏싱 브릿지(Lashing bridge)"라 함은 데크상의 랏싱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위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선체 구조물을 말한다.
- (카) "랏싱 콘(Lashing cone)" 이라 함은 컨테이너 사이를 연결하는 삼각뿔 형태의 고박용구를 말한다.
- (타) "화물적부도(Stowage plan)"라 함은 컨테이너의 적재위치 및 적·양하 항구 등을 표기한 하역상세도를 말한다.
- (파) "셀 가이드(Cell guide)"라 함은 컨테이너 선박의 선창에 컨테이너를 적·양하하도록 구조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.
- (하) "안티 랙 스페이서(Anti-rack spacer)"라 함은 선박의 선창 바닥에서 20피트 컨테이너를 움직이지 않도록 상호 연결하는 결속용구를 말한다.
- (거) "앰블런스 케이지(Ambulance cage)"라 함은 긴급시 환자를 운반하도록 뚜껑이 있는 들것 형태의 운반용구를 말한다.
- (너) "갱 웨이(Gang way)"라 함은 현문사다리와 같이 작업을 위해 승·하강할 수 있도록 선박과 안벽(에이프런)을 연결하는 임시 가설통로를 말한다.
- (더) "플랫트 랙 컨테이너(Flat rack container)"라 함은 컨테이너 지붕, 측벽, 양단 벽을 제거하고 4개의 기둥만 가진 컨테이너로 철재, 목재, 파이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말한다.
- (러) "육상작업지휘자"라 함은 컨테이너 크레인 하부의 안벽에서 사전 작업계획에 따라 육상의 하역장비 및 작업자를 통제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말한다.
- (머) "국제해상위험물규칙"(IMDG)라 함은 국제해사기구(IMO :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)에서 정한 해상위험물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.
- (버) "에이프런(Apron)"이란 부두에서 화물(컨테이너)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양하하는 안벽 상부를 말한다.
- (서) "컨테이너 야드(Container yard)"란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하하기 위하여 터미널내로 운반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선박으로부터 양하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장소로 써 주로 만재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.

- (어) "화물집하장 (Container freight station, CFS)"이란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내에서 일반화물을 집화하여 창고에 보관한 후, 컨테이너에 적출하는 장소를 말한다.
- (저) "랏싱(Lashing) 작업"이란 컨테이너의 고정 및 고박을 위하여 턴 버클 등 하역용구를 사용하여 묶는 작업을 말한다.
- (처) "프론트 엔드 토픽 로더(Front end topic loader)"란 빈 컨테이너를 주로 운반 하거나, 높게 적치하기 위한 지게차와 유사한 장비로서 마스트에 스프레더를 장착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말한다.
- (커) "리치스태커(Reach stacker)"란 중량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적재하기 위한 지게차의 일종으로 붐 끝단에 스프레더를 장착한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말한다.
- (터) "야드 트랙터(Yard tractor)"란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에서 섀시(Chassis)를 연결하여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이동 및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야드 전용차량을 말한다.
- (퍼) "스프레더(Spreader)"란 컨테이너 크레인, 트랜스퍼크레인등의 권상용 블록 (Block) 하부에 부착되어 컨테이너를 집어올려 하역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(허) "트랜스퍼 크레인(Transfer crane)"이란 컨테이너 야드에서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이송·적재하거나 차량에 상·하차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을 말한다.
- (고) "로드-핀(Load pin)"이란 컨테이너를 적하하거나 양하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슬링(Sling)에 부착하여 컨테이너의 코너캐스트(Corner cast)에 결속하는 하역 용구를 말한다.
- (노) "로-로(Ro-Ro)선"이란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채직접 선박의 홀드 내부로 이동하여 적하하거나 양하하는 선박을 말한다.
- (도) "불워크(Bulwark)"란 선박의 상부 갑판에 설치하여 파도를 막고 승선자의 갑 판상 추락 등을 방지하는 난간대 역할 설비를 말한다.
- (로) "플랫트 랙 컨테니어(Flat rack cointainer)"란 컨테이너의 지붕, 측벽, 양단벽을 제거하고 4개의 기둥만 가진 컨테이너로 철재, 목재, 파이프 등의 화물을 운송 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말한다.
- (모) "운영요원"이란 하역회사의 지시를 받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본선과 육상의 작업지휘자, 신호수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말한다.
- (보) "국제해사위험물코드"(IMDG Code)란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정한 해상위험 물의 종류를 말한다.

B - 7 - 2015

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일반사항

4.1 작업준비

- (1) 야간에는 크레인의 조명장치가 각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본선작업지휘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 - (가) 선박의 계류인원과 줄걸이 작업자(Line handling)의 안전
 - (나) 현문사다리 발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해물
 - (다) 펜더(Fender)의 올바른 설치 위치
 - (라) 선석(Berth)을 따라 소형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지
- (3) 안벽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이동중인 컨테이너 크레인 주행로(크레인 레그 하부 포함)에 없어야 하며, 작업지휘자는 근처에서 작업 중인 수송차량을 통제해야한다.
- (4) 컨테이너 크레인의 스프레더 교체, 로드 핀(Load pin) 및 리프팅 빔(Liftingbeam)을 장착할 때에는 차량 통행로에서 벗어나 컨테이너 크레인의 백 리치(Back reach) 영역에서 작업해야 한다.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작업할 장소의 한쪽 도로를 안전방책으로 차단한 후 작업한다.
- (5) 선박이 접안 중일 때에는 컨테이너 크레인을 가동하지 말아야 하며, 만약 정비를 하고 있다면 즉시 그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한다.
- (6) 작업지휘자는 선박이 선석에 접안하기 전에 크레인 붐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컨테이너 크레인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.

- (7) 냉동 컨테이너에 전기 플러그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권상하지 않아야 하며, 기타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(8) 선박출입 설비는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부두 안벽에 가능한 밀착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9) 날이 어두워지면 부두 안벽 및 출입지역에 조명 시설이 작동되어야 한다.
- (10) 선박과 부두 안벽 사이에는 안전 방망을 설치해야 한다. 안전방망을 현문사다리 하부 플랫폼 1 m 전방에서 상부 플랫폼 1 m 후방까지 선박과 사다리 하부의 추락 공간을 완전하게 감싸는 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.
- (11) 건현(Free board)이 높아 현문사다리(Accommodation ladder)가 해상에 위치 할 경우 보조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. 이 사다리는 계단 형 또는 현문사다리 형태의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.
- (12) 하역설비 작업자는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을 현문사다리를 통하여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.
- (13) 선박출입설비 근처에는 유사 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한 구명줄과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환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구명줄은 국제해상인명안전규칙(SOLAS)에서 정한 직경 8 mm 이상, 길이 27.5 m 이상의 합성로프 등 견고한 것을 비치한다. 다만, 각 부두의 특성에 맞게 안벽에 별도의 야간 구조설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.
- (14) 선박출입 설비와 그 주변에는 미끄럼이나 낙하의 위험이 있는 물건 및 기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.
- (15) 본선 통행로 상의 패드아이(Pad eye), 링(Ring), 콘(Cone) 등은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16) 컨테이너 크레인 스프레더와 네트 슬링(Net sling) 등을 이용한 선박출입은 금 지해야 한다.
- (17) 현문사다리 승강 시에 2답단에 2인 이상 승강해서는 안 된다.

4.2 보호구 착용

- (1) 작업자는 작업조건에 따라 안전모, 안전화 및 안전대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, 안전모는 턱끈을 매어야 한다.
- (2) 터미널에 출입하는 모든 보행자는 출입게이트에서 안전모를 지급받아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2 m 이상의 고소작업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4) 플랫트 랙 등 특수 컨테이너의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한다.
- (5) 야간작업 시에 작업하는 근로자는 야광 띠를 상·하의에 부착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(6) 컨테이너 상부 및 재래식 스프레더 탑승 등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7) 재래식 스프레더에 탑승한 근로자는 안전대를 스프레더의 고정물에 걸고, 작업하여야 한다.
- (8) 안전보호구는 날씨를 포함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, 방수 및 방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9) 그 밖에 작업지휘자의 보호구 착용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4.3 조명확보

- (1) 각 작업장의 작업면은 75 룩스(Lux)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여야 하며, 컨테이너에 의해 그늘진 곳도 5 룩스(Lux)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프론트 엔드 토픽 로더 및 리치스태커 등 터미널전용 하역운반기계의 사용 시 차량 전조등을 포함한 전 조명의 밝기가 75 룩스(Lux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(3) 임시조명이 설치된 곳의 전선은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, 전선이 출입문을 통하여 통과하는 경우 출입문을 버팀목으로 고정시켜 열려 있도록 한다.
- (4) 조명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, 작업면의 밝기는 규정조도를 유지하도록 조명의 수를 증가하여야 한다.
- (5) 야간에 작업이 없어 소등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통행로에는 최소한 8 룩스(Lux)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6) 불빛의 섬광과 그림자에 의한 극심한 조도 차이를 피하여야 한다.
- (7) 결함이 있는 조명장치는 선박 작업지휘자에게 알려 교체하여야 한다.
- (8) 이동식 또는 임시조명은 필요한 조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.
- 주) 위 조도에 관한 수치(75, 8, 5룩스(Lux))는 ILO의 "Model safety manual supporting the portworker development programme"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이다.

4.4 작업장 관리

(1) 작업장 주변, 크레인 및 주행로 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.

- (2) 모든 시설 및 장비는 허가를 받은 담당자가 조작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장 내에서 작업 이외의 행동(낚시, 운동 등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무단으로 화기취급과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5) 위험표시 구역, 통행금지 구역의 출입은 담당자, 작업지휘자 및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(6) 터미널 내에서 통행을 하는 경우에 모든 출입자는 지정된 보행통로를 이용하거나, 터미널 운영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장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처리 및 응급처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, 관계자는 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.
- (8) 장비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컨테이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9)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90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통로에는 컨테이너를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10) 트랜스퍼 크레인, 섀시(Mobile harbor crane) 등의 운전실과 같은 고공 운전실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수송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, 응급시에는 절차에 따라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.
- (11) 부두의 컨테이너 사이의 빈 공간으로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우회하도록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(12) 부두에서 여러 회사에 의한 컨테이너 하역장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- (13) 권상 전에 스프레더 등 하역설비가 컨테이너의 코너캐스트에 적절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확인하고, 해체 전에는 하역설비가 컨테이너 코너캐스트에서 완전히 해체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(14) 차량은 크레인 주행로에 주차하거나 정차하여서는 아니되며, 크레인이 이동 중일 때에는 해당 차도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.
- (15) 차량운행 시에는 조명과 날씨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16) 장비가 이동 중일 때 모든 작업자는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, 장비가 작동 중일 때 검수자(Clerk)는 자신의 지정위치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어야 한다.
- (17)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내려지고 스프레더가 컨테이너에서 완전히 이탈될 때 까지 또는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서 완전히 들어 올려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운전자는 트레일러를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(18) 작업지휘자나 통제실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, 작업승인을 한 경우에만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.
- (19) 차량, 기계, 장비운전자는 항상 지정된 교통흐름에 따라 표시된 주행로를 운전하여야 한다.
- (20)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, 기계, 장비의 운전자는 차량 등의 하부에 다른 부품, 기계 또는 장비의 부속품 등을 남겨두어서는 아니 된다.
- (21) 빈 컨테이너는 태풍, 돌풍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저단 또는 계단식으로 적재하고, 3단 이상은 랏싱하여야 한다.
- (22) 야적장 주변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구획으로 표시된 지역이나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(23)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전기플러그의 연결 여부를 확인한 후 권상하여야 한다.
- (24) 경사로, 침하지역 등 화물을 적재하기 어려운 곳에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, 필요한 경우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25) 리치스태커 또는 프론트 엔드 토픽로더 등으로 컨테이너를 들고 도로를 200 m 이상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26) 양하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항상 스프레더, 로드 핀 등 보조설비를 사용하여 야한다.
- (27) 차량이 일렬로 이동할 때에는 차량충돌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, 차선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4.5 차량운행 안전

- (1) 컨테이너를 적재한 모든 출입차량은 출입게이트에서 컨테이너의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(2) 작업과 관계없는 외부 차량은 항만당국이나 터미널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항만보안규정(ISPS Code)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3) 터미널 출입허가가 이루어지기 전 외부차량에 대하여 안전규칙과 교통체계를 주지시켜야 한다.
- (4) 터미널에서 외부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운행속도는 터미널 내 제한속도로 하고, 우천 등으로 시야가 나쁠 경우에는 속도를 50% 감속하여야 한다.
 - (나) 야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다) 지정된 주행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, 작업장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라) 에이프런(Apron)에서 차량은 차량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유도되어야 하며, 정지와 출발신호가 지켜져야 한다.
- (5) 차량운행 시 교차지점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여 좌·우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 야 한다.

- (6) 부두 및 터미널 내 모든 차량은 지정장소 외에서 주차하거나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7)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(8) 리치스태커 등으로 터미널 주변을 운전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스프레더나 화물의 중심을 가능한 낮게 유지한다.
- (9) 표시된 도로와 지정된 통행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야적장을 가로질러 횡단하여서 는 아니 된다.
- (10) 야간뿐 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야가 나쁘다면 운전할 때 전조등을 하향으로 켜야한다.
- (11) 부두 및 터미널 내에서 운행하거나 항만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리치스태커, 프론 트 엔드 토픽 로더는 사각지대 없이 운전자가 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후방카 메라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12) 터미널 내의 모든 차량 및 하역기계는 전조등, 후미등,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13) 경사면에서 리치스태커나 프론트 엔드 토픽 로더로 컨테이너를 싣고 운행 할 때 에는 컨테이너가 경사면의 위로 향하도록 하여 올라가거나 내려가도록 하여야 한다.
- (14) 차량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15) 부두 내의 모든 출입차량은 출입게이트에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(16) 정지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정지를 하여야 한다.
- (17)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엔진을 정지한 후 주차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18) 컨테이너[특히 40 ft(12 m)용]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항상 작업 반경을 확보하고 장비를 조작하여야 한다.
- (19) 로-로(Ro-Ro)선 차량갑판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엔진 회전속도를 올려서는 아니 된다.

4.6 선상 비상조치

- (1) 작업지휘자는 선박의 비상조치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작업자들 도 역시 선상의 비상조치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2) 선상에 있는 모든 작업자는 비상사태 경보가 발동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.
- (3) 작업지휘자는 선상에 근무 중인 작업자의 명단을 작성 보관하고 있어서 비상사태 발생시 각각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.
- (4) 정기적인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 대피요령을 익혀야 한다.
- (5) 부상자를 수송할 앰블런스 케이지(비상용 운반도구)는 선박이 선석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.
- (6) 선상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응급조치 치료를 요하는 중대사고 발생 시 작업지휘자 는 육상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7) 선상화재 발생 시에는 작업자 전원이 안전한 통로를 통해 침착하게 이동해 하선 할 수 있도록 한다. 비상 전담반이 상황종결을 발표할 때까지 누구도 재승선 해서는 안 된다.
- (8) 선창 내에 산소가 고갈되었거나 위험가스의 누출이 의심 될 경우, 작업자 전원은 그 즉시 선창에서 대피해야 한다.

B - 7 - 2015

(9)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의심 될 경우에도 비상전담반을 그 즉시 불러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, 작업자가 단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. 사고현장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작업자는 해당 작업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에 대피해야 한다.

4.7 작업자의 승·하선

- (1) 교대근무가 끝나면 선상에서 사용했거나 가지고 있었던 도구 및 장비를 작업지휘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(2) 현문사다리나 갱 웨이를 출입할 때는 이동되고 있는 상부의 컨테이너를 피해서 출입한다.
- (3) 작업지휘자는 현문 사다리나 갱 웨이 상태를 점검하고 하선하기 전에 선상의 작업자들이 모두 하선했는지 확인한다.
- (4) 컨테이너 차량을 직접 적재하는 로로(Ro-ro)선에서 차량과 작업자가 동일한 통로 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작업자 전용 출입통로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.
- (5) 승선 시에도 하선 시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4.8 터미널 운영사 업무

- (1) 모든 작업장 출입자에게 야광자켓과 안전모 및 안전화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2) 안벽 측에 추락 익사사고 방지용 구명도구(구명줄, 자기점화등이 달린 구명환)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현장의 적절한 곳에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용품(들 것, 부목, 비상의약품, 비상탈출용 호흡기구 등) 및 응급처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, 응급처치 설비에는 산소호흡기를 포함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4) 모든 야드차량은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밝은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.
- (5) 화물집하장(CFS) 등 일정구간 내에서 작업 시에는 분진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작업자에게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(6) 부두 출입차량 운전자가 터미널의 안전수칙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 중 작업자들이 쉴 수 있는 안전공간을 터미널 내에 확보하여야 하며, 작업 환경에 따른 적절한 음용수를 공급하여야 한다.
- (8) 부두의 안전표시, 주행라인 및 블록표시 등은 항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.
- (9) 모든 작업장에는 작업지휘자 등 터미널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.
- (10) 일정시간 작업 후에는 작업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가능한 모든 휴식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(11) 항만의 시설. 장비 등의 검사기준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의 규정을 따라야한다.
- (12)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야 한다.

4.9 선사 및 선박운항자 업무

(1) 선박의 통로 상에서 높이가 2 m 이하인 돌출부분이나 머리 위 충돌부분은 눈에 잘 띄는 표식 또는 방호조치를 본선에서 취하여야 하며, 작업지휘자는 작업 전본선 당직사관과 협의하여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2) 부선의 선측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고정식 또는 눕힘식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, 선박안전 규칙에 따라야 한다.
- (3) 선박의 데릭 또는 데크크레인 등 하역장비에는 안전사용 하중을 표시하여야 하며, 표시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작업 전 작업지휘자가 작업자에게 작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.
- (4) 본선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박의 레이더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작동 시에 는 사전에 작업지휘자와 상의하여야 한다.
- (5) 강풍, 파도 등과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선의 장애물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선박의 통로와 작업장 내 미끄러운 물질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.
- (7) 불량 랏싱 도구들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출하여야 한다.
- (8) 본선작업 전, 선박 내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작업지휘자와 협의하고, 모든 작업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.
- (9) 본선의 위험구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위험구역에 대하여는 본선 작업지기자 및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(10) 선박의 파손된 부분은 선박운항자가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, 임시로 던네지 (Dunnage)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. 작업자의 역할 및 임무

5.1 운영요원 공통사항

B - 7 - 2015

- (1) 작업지휘자, 신호수 등 운영요원은 무선 통신설비를 소지해야 한다.
- (2) 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무선통신 채널이 준비되어야 한다.
- (3) 기상악화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다. 작업의 재개는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의해 시작해야 한다.
- (4) 작업 전 모든 작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작업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

5.2 작업지휘자(Foreman)

- (1) 작업 전 적・양하 서류 및 특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- (2) 본선작업 요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주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.
- (3) 본선 현문사다리 밑에 안전방망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(4) 작업착수 전에 전체 본선설비와 도구 및 선상의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(5) 신호수 및 작업에 투입된 모든 인원의 안전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(6) 신호수는 가장 안전하고,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.
- (7)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8) 랏싱 브릿지가 없는 선박의 경우 선창이 열린 해치와 해치사이의 작업통로로 작업자가 통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9) 폭발성, 유독성,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적재 유무를 위험물 안전담당자가 입회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.

- (10) 본선 각 작업자의 작업진행이 적정한 지 확인해야 한다.
- (11) 해치커버를 개ㆍ폐 시 선박 설비상의 이상유무 및 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.
- (12) 강풍, 폭우, 폭설, 농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.
- (13) 작업 중 선박설비와 화물 및 본선이 종경사(Trim) ±3°, 횡경사(List,heeling) ±6° 이상으로 기울어지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려 사고가 예상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 단시키고 지휘계통에 보고해야 한다.
- (14) 플랫트 랙(Flat rack) 등 특수컨테이너 작업 시 작업 성격에 맞는 하역 도구를 선정하고 사용 전·후에 점검해야 한다.
- (15) 특수컨테이너 작업 시 화물의 형태와 적재된 주변을 검토하고, 중량 및 편중 등을 감안하여 슬링 포인트(Sling point) 및 적절한 하역도구를 선정해야 한다.
- (16) 특수컨테이너는 선적지의 작업 기록서류 등을 본선 관계자로부터 확보하거나 선적작업 사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.
- (17) 일반 컨테이너보다 높고, 긴 컨테이너 등은 작업 시에 선수, 선미 쪽에 각 1명씩 줄 걸이 작업자를 배치하고, 양쪽에서 로드 핀을 장착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 후 20 cm ~ 30 cm 정도 권상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호에 따라 서서히 권상하도록 한다.
- (18) 크레인의 안전하중을 초과하거나, 플랫트 랙 컨테이너 등의 내부에 화물의 적재 상태가 불안정하여 안전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별도 지시 및 지휘를 받아야 한다.
- (19) 작업 중 사고 발생시에는 적절한 응급조치 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.
- (20) 작업지휘자는 고정식 사다리의 균열 등을 확인하여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다. 점 검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하며, 선장에게 결함부분을 보고 해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21) 개방된 선창에 출입할 경우에도 작업자가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진입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(22) 작업 중 사전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.
- (23) 작업에 대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, 그 내용을 모든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일치시켜야 한다.

5.3 육상작업지휘자

- (1) 컨테이너 크레인 주변 작업자의 통제 및 안전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(2) 작업 전 적 · 양하 서류 및 특기사항을 확인 및 점검해야 한다.
- (3) 컨테이너 크레인 주변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.
- (4) 컨테이너 크레인 주행로 주변을 정리·정돈하고 기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- (5) 적 · 양하 화물의 수량 및 특기사항을 정확히 점검 및 기록해야 한다.
- (6) 컨테이너 크레인 밑으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행속도를 사내 표준지침에 따라 제한시켜야 한다.
- (7) 위험물 적·양하시 소화기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 및 작업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.
- (8) 작업에 투입된 야드 트랙터(Yard Tractor) 운전자에게 섀시 교체, 정차 위치 또는 상차위치를 정확하게 지시해야 한다.
- (9) 이동중인 컨테이너 크레인 하부에 모든 출입을 금지시키고, 지정된 보행로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.

B - 7 - 2015

(10) 검수원, 랏싱작업자 및 선원 등의 작업자가 컨테이너 크레인 본체에 기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.

5.4 신호수(Signal man)

- (1) 컨테이너 크레인 주변으로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크레인의 전·후 또는 근접하여 차량이 주·정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
- (2) 신호는 가장 안전하고, 잘 보이는 곳에서 한 사람이 기준 신호요령에 따라 신호하고 무전기를 사용해야 한다.
- (3) 검수원, 랏싱 맨, 선원 등 작업자가 크레인 주변에 대기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.
- (4) 컨테이너 크레인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기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- (5) 권상 또는 권하 되는 컨테이너 밑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, 그 지역에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.
- (6) 하역도구를 사용한 후 필히 안전여부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운전자에게 신호해야 한다.
- (7) 적·양하 작업시 크레인의 스프레더가 컨테이너의 코너 캐스트에 삽입되고 차량 의 섀시에 정확히 상차되었는지 확인하고, 작업자의 안전 대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차량 출발신호를 해야 한다.
- (8) 해치커버의 권상 전 트위스트 록킹(Twist locking)장치의 결속상태를 확인해야 한다.
- (9) 선체설비 및 본선의 이상 등을 발견 시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, 즉시 작업지휘자에게 보고한다.

B - 7 - 2015

- (10) 화물 또는 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상작업에 차질이 예상될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지휘자에게 즉시 보고한다.
- (11) 개방된 선창의 해치와 해치 사이의 해치코밍으로 통행하거나 그 위에서 신호하지 않도록 하고, 대피지역을 먼저 선정한 뒤 신호를 해야 한다.
- (12) 크레인의 붐 권하와 주행시는 선체와의 충돌여부, 주변의 장애물 등을 확인해야 한다.
- (13) 해치커버를 양하 할 때 크레인 주변에 작업자 또는 차량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.
- (14) 양하작업 전에 본선작업 서류를 완전히 파악하고 확인한 후 20 ft 또는 40 ft 컨테이너 구분을 크레인 운전자에게 사전에 신호해야 한다.
- (15) 신호업무 수행 시에는 신호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(랏성작업 등)을 하지 말아야한다.
- (16) 작업시 적·양하 계획서류를 지참하고 화물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.
- (17) 이동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손으로 잡고 흔들림을 줄이거나 위치를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.

5.5 위험물안전관리자

- (1) 선사로부터 위험물 적하목록을 접수하여 위험물 등급에 따라 직선적, 직상차 또는 장치 화물별로 분류하여야 한다.
- (2) 적하목록에 위험물표시, 위험물의 위치, 직반출 표시등이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3)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하역작업 전 작업자에게 위험물 종류별 취급요령, 응급조치 요령, 안전보호구, 소화기구 사용법 등 취급상 주의사항을 교육시켜야 한다.
- (4) 위험물 하역 시에는 입회하여 위험지역 설정 후 작업자 및 차량을 통제하고 "위험물 작업 중" 표시와 적절한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한다.
- (5)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을 숙지하고 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
6. 컨테이너의 적・양하 작업

- 6.1 갑판(Deck)의 적·양하 작업
 - (1) 컨테이너 상부의 진입은 다음과 같은 설비 중 알맞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.
 - (가) 랏싱 케이지
 - (나) 스프레더(랏싱 작업자 운반용으로 설계된 스프레더)
 - (다) 사다리
 - (라) 랏싱 플랫폼(Lashing platform)
 - (마) 곤도라
 - (바) 랏싱 브릿지
 - (2) 랏싱 케이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낙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져 야 한다.
 - (가) 최소 안전율은 4로 설계되어야 하며, 규격은 20 ft(6 m) 컨테이너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.
 - (나) 철망 등으로 안전 보호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.
 - (다) 내부에 랏싱 콘과 공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(라) 컨테이너 크레인 스프레더에 연결할 때 트위스트 록(Twist lock) 장치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정장치에 의해 고정되어야 한다.

- (마)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3) 스프레더 프레임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낙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져야 한다.
 - (가) 작업대를 타고 내릴 때 안전한 사다리와 손잡이 구조물 보강
 - (나) 승강위치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위험요소의 제거
 - (다) 승강부분에 최소 1.1 m 높이의 가드레일의 설치
 - (라) 스프레더 상부에 랏싱 콘이나 다른 도구를 담는 적재공간의 마련
- (4) 상기 설비 사용 작업자는 랏싱 케이지나 스프레더 등에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고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5) 랏싱 케이지나 스프레더에 승강할 때 선박의 불 워크(Bulwark)에서 승강하는 것 은 금지되어야 한다.
- (6) 랏싱 콘들이 승강하는 컨테이너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낙하하지 않도록 사전 제거되어야 한다.
- (7) 컨테이너의 상부로 이동할 때에는 미끄럼방지장치가 부착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.
 - 이때는 2인1조 작업을 실시하여 사다리의 흔들림에 의한 추락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, 승강위치에서 3단 이상의 컨테이너 위로 진입하는 것은 금지한다.
- (8) 컨테이너 지붕 등의 고소작업 시에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 - (가) 반드시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하고, 케이지나 스프레더의 고정지점에 고정 후 작업한다.
 - (나) 바닥에는 미끄럼방지장치가 되어 있고 앞부분은 선심이 삽입된 작업용 안전화를 신는다.
 - (다) 랏싱 도구는 바스켓 등의 운반구를 사용하여 상부로 운반한다.
 - (라) 순간 최대풍속이 20 m/s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.

- (9) 랏싱 콘(Lashing cone) 부착 및 해체작업시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랏싱 콘을 해체 한 후에는 바스켓 안에 두어야 하며, 해체된 랏싱 콘을 갑판 또는 컨테이너 지붕 위로 떨어뜨리거나 집어 던져서는 안 된다.
 - (나) 모든 콘을 해체 한 후에는 바스켓을 랏싱 케이지 안으로 옮기고 신호에 의해 내려야 한다.
 - (다) 상부의 랏싱 콘을 부착 또는 해체 시, 하부 작업자는 랏싱 콘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컨테이너 두개 폭 만큼 대피거리를 유지한다.
 - (라) 체인 슬링, 와이어로프 슬링, 랏싱 로드 등 랏싱 도구는 반드시 선박의 지정된 공구함에 보관하여야 한다.
 - (마) 일반적으로 갑판의 하역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갑판의 랏싱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. 그러나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, 크레인의 작업위치와 랏싱 작업위치 사이를 최소 두개의 컨테이너의 폭만큼 띄워야 한다.
 - (바) 랏싱도구인 턴 버클(Turnbuckle)은 단단히 조여 주되, 완전히 조인 후 반 바 퀴를 풀어 응력을 분산시킨다.
 - (사) 랏싱 작업은 최소한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.
 - (아) 랏싱 도구와 랏싱 콘을 해체한 후에는 선박 갑판의 툴 박스에 보관하여야 하며, 해치 커버 위나 선박의 통로 상에 두지 않도록 한다.
 - (자) 개방된 해치 옆이나 수평개구부 옆에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.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대를 주변의 견고한 시설 또는 설비에 고정하고 작업한다.
 - (차) 육상에서 랏싱 콘을 담은 콘 박스(Cone box)는 크레인과 차량 주행로, 앵커 (Anchor) 위치에 근접하여 두지 말아야 한다.
- (10) 컨테이너선 작업구역은 컨테이너 크레인의 조명을 포함하여 75 룩스(lx)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.

(11) 기타고소 작업

- (가) 추락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위의 모서리에 서 있지 않아야한다.
- (나) 작업하는 컨테이너의 옆 컨테이너에는 서 있지 말아야 한다.
- (다) 랏싱 콘들이 낙하될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사이 틈새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.

- (라) 다음 작업이 예정되는 컨테이너 위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.
- (마) 작업 중인 컨테이너와 작업자 사이에는 최소한 한 개의 컨테이너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유지한다.
- (바) 컨테이너 상부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옆 컨테이너로 뛰어넘지 말아야 한다.
- (12) 스프레더 작업이 곤란한 높은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는 로드 핀 또는 전용의 스 프레더로 작업을 해야 한다.
- (13) 이슬이나 해풍에 의한 해수로 인해 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갑판, 컨테이너 상부, 통로 등에서 뛰어서는 안 되며, 이동 중에도 신체의 무게 중심을 낮게 하여야 한다. 또한 양손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태로 되어야 한다.
- (14) 해치커버 이동시 해치커버 위의 모든 움직일 수 있는 랏싱도구는 툴 박스에 보관하고,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.
- (15) 야드 등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권상될 경우 컨테이너 하부 틈새에 돌 등 이물질 이 끼어있는지 확인하고, 이물질은 하역작업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.
- (16) 모든 하역작업은 육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단, 육상과 반대쪽 부선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등 컨테이너 크레인 사용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선박의 본선 크레인을 사용 할 수 있다.
- (17) 로드 핀이 걸려있는 와이어로프 슬링(Sling)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율 5 이상을 확보하고, 걸림 각도가 60° 이내가 되는 충분한 길이의 슬링을 사용해야 한다. 또한 와이어로프 슬링의 편입은 총 5회 이상 꼬아 넣어야 한다.
- (18) 컨테이너가 권상되기 전 컨테이너 문짝(도어) 열림 등 화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해야 한다.
- (19) 사용한 하역도구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이상 발생 시 표시와 함께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, 이상이 있는 것은 작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 하여야 한다. 또한 하역도구는 보관 창고에 정리·정돈되어 있어야 한다.

B - 7 - 2015

6.2 선창(Hold) 적·양하 작업

- (1)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등 작업관계자가 선박 슬롯(Slot)의 작업지시를 위해 작업 통로 상에서 지휘 할 경우 주변의 견고한 곳에 안전대를 고정 후 작업한다.
- (2) 화물적재 계획서(Stowage plan)를 작업 전 입수하여 적·양하 컨테이너의 위치를 파악 후 지시한다.
- (3) 셀가이드로 권상되는 컨테이너의 출입구 열림 상태를 확인한다.
- (4) 선창 내부의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투입된 경우, 스트링거 상에서 대기하고 컨테이너에 작업이 없다는 것을 신호수 또는 작업지휘자에게 확인한 후 작업한다.
- (5) 선창내부에 20 ft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해 안티 랙 스페이서(Anti rack spacer) 등 하역용구를 적치할 경우 사전에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.
- (6) 작업자가 선창 내부에 실린 컨테이너의 상·하 이동 시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.
- (7) 작업자는 선박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안전난간이 없는 선 박에서는 작업통로에 안전블록을 결속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.
- (8) 안전블록은 관성 릴(Inertia reel) 형태의 추락방지용으로 천천히 당기면 늘어나고 추락 등 충격하중 부가 시에 급속히 정지하는 구조로서 각 고정용구는 2,300 kg 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, 잠재적인 충격하중의 최소 2배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.
- (9) 작업 전에 화물적하목록(Manifest)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롤 페이퍼(Roll paper) 등 구르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랏싱의 풀릴 위험에 주의하여 적·양하 한다.

B - 7 - 2015

- (10) 셀 가이드의 엔트리 가이드(Entry guide) 파손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에 컨테이너의 이적 또는 수리작업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.
- (11) 개방된 선창의 주변 랏싱 작업자 존재여부를 확인 후 하역과 랏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(12) 해치커버를 개·폐시 상부에 고정되지 않은 랏싱 도구는 바스켓 또는 선상의 공 구함에 보관한다.
- (13) 적·양하는 컨테이너의 운반구간 내에 작업자가 있지 않도록 대피 시키고 진행 해야한다.

7. 터미널의 하역운반장비 안전작업

7.1 야드 트랙터(Yard tractor) 운전

- (1) 운전자는 각종 계기 및 주위를 확인하고,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1단으로 출발하여야 한다.
- (2) 컨테이너의 상차 시 화물의 편중여부를 확인하고, 섀시에 정확하게 안착되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운행 중 회전위치에 오기 전 속력을 미리 낮추어야 하며, 회전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최대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.
- (4) 부두 내에서는 최고시속 30 km 이내로 운행하고, 중량물 작업 시에는 시속 10 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한다.
- (5)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랙터가 섀시를 끌 때 모든 브레이크 에어라인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, 운전시작 전에 브레이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.

- (6) 운행 중 야드 트랙터의 작동이 불량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,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.
- (7)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, 특히 빈 차량의 섀시에 근로자를 태위서는 아니 된다.
- (8) 본선 작업 시에는 육상에 신호수가 배치된 경우 신호수의 출발신호에 따라 출발 하여야 한다.
- (9) 운행 중에 졸음 및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10) 작업 후 섀시 및 야드 트렉터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, 경사로에서는 움직임 방지를 위한 쐐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20 ft(6 m) 컨테이너는 트레일러의 뒤쪽에 상차하여야 한다.
- 7.2 리치스태커(Reach stacker) 및 프론트 엔드 토픽 로더(Front end topic loader) 운전
 - (1) 리치스태커는 중량물 취급 시 최고 시속 10 km 이하로 운행하고, 프론트 엔드 토픽 로더는 시속 10~15 km로 운행하여야 한다.
 - (2) 작업 후 주차 시에는 스프레더 및 포크를 지면에 밀착시키고,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.
 - (3) 주행 시 스프레더를 20 ft(6 m) 상태로 하고,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내려서 주행하여야 한다.
 - (4) 컨테이너를 권상할 때에는 계기판과 양쪽 콘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후 권상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5) 우천 작업 시에는 컨테이너의 미끄러짐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6) 오픈 탑 컨테이너를 2단 이상으로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7) 빈 컨테이너를 블록에 이동 시 마스터 높이와 스프레더의 폭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8) 2개의 장비로 같은 통로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컨테이너 한 개 거리인 40 ft(12 m)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9) 2개의 장비로 맞은 편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거리는 최소 100 ft(30 m)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7.3 화물집하장(CFS) 지게차 운전

- (1) 지게차는 일반화물만 취급하여야 하며, 컨테이너에 알맞은 포크 등을 부착한 후 빈 컨테이너 작업만 하여야 한다.
- (2) 컨테이너에 적출·입 작업 시 지게차 마스트 상단과 컨테이너 탑 레일 부분의 간 격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한다.
- (3) 지게차 포크 끝단으로 컨테이너를 밀거나 끌어서는 아니 된다.
- (4) 주행 시 지게차 포크를 가능한 지면에 가깝게 내린 상태에서 운행한다.
- (5) 내부화물을 적출·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중심을 지게차 포크의 중심에 맞추어야 한다.
- (6)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출·입하는 경우에는 지게차 및 작업자의 움직임을 작업지휘 자가 통제하여야 한다.
- (7) 점보 백(Jumbo bag) 작업 시 슬링을 포크에 거는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지 휘자가 입회하여 통제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8)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지게차는 사전에 적정한 용량과 규격을 정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.
- (9) 경사진 곳을 운행하는 경우에 오를 때는 전진 주행, 내려올 때는 후진 주행하여 야 하며,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8. 컨테이너 야드에서의 작업안전

8.1 야드(Yard)작업 안전

- (1) 야드 내의 모든 출입차량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차선규정을 지키고, 차량이 일렬로 이동할 때에는 차량 충돌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차량은 크레인 이동 경로에서 주차하거나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며, 크레인이 이동 중일 때에는 해당 차도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.
- (3) 차량은 조명과 날씨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장비가 이동 중인 경우에 모든 작업자는 안전장소에 있어야 하며, 장비가 작동중 인 경우에 검수자 등 하역관계자는 자신의 지정위치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어야 한다.
- (5) 육상 및 본선 크레인 주행로 상에는 화물, 차량 등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된다.
- (6)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내려지고 스프레더가 완전히 이탈될 때까지 또는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서 완전히 올려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운전자는 트레일러를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.

- (7) 소음이 클 경우에는 귀마개 및 귀덮개를 착용한다.
- (8) 부두 내에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운전자는 작업을 멈추고, 작업지휘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(9) 만일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지시자 가 무선이나 구두로 지시를 하였을 때에 그 지시를 받은 작업자는 해당 지시를 정확하게 받고 이해하였음을 알려야 한다.
- (10) 감독자 또는 통제실에서 작업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만 작업장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.
- (11) 모든 차량은 안전표지판 또는 방향지시판에 주의하여야 하고, 교차로에서는 일 단정지를 하여야 한다.
- (12) 빈 컨테이너는 태풍, 돌풍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저단 또는 계단식으로 적재를 하고, 3단 이상은 랑싱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13) 보행자가 야드 주변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구획으로 표시된 지역 또는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(14) 모든 보행자는 움직이는 장비와 차량을 계속 주시하고 경고음 및 발광 불빛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15)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전기플러그가 연결된 상태로 컨테이너를 인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16) 경사로, 침하지역 등 화물을 적재하기 어려운 곳에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, 줄이나 방책으로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17) 리치스태커, 프론트 엔드 토픽 로더 등으로 컨테이너를 들고, 부두 내 도로를 200 m 이상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

B - 7 - 2015

- (18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다음의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적하 또는 양하 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항상 스프레더, 로드 핀 등 정확한 부착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(나) 장비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컨테이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다) 권상 전 스프레더 등 부착도구가 적절하게 컨테이너의 코너캐스트에 맞물려 있는지를 확인하고, 해체 전에 부착 도구가 컨테이너 코너캐스트에서 완전히 이탈된 후 컨테이너가 안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(라) 컨테이너[특히 40 ft(12 m)용]를 운반 또는 예인하거나 코너를 돌 경우에는 항상 여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조작하여야 한다.
 - (마) 가능한 도로 전방을 잘 볼 수 있는 운전위치와 방향을 선택하여야 한다.

8.2 화물의 인수 · 인도작업 안전

- (1) 육상 트레일러 운전자는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트위스트 록을 컨테이너 야드교 차로 지역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만 풀고 잠거야 한다.
- (2) 육상 트레일러 운전자는 컨테이너를 하역장비로 하차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고정 시키는 트위스트 록을 개방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자들은 부두의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규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8.3 긴급 작업중지 구역 지정

- (1) 긴급하게 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통제실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, 통제실은 상황에 따라 차량, 보행자 및 장비를 해당 구역에서 나오도록 하고 작업중지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(2) 긴급 작업중지는 유·무선을 통하여 전달하며, 작업중지가 결정되면 통제실에서 긴급 작업중지가 실시중임을 모든 작업자 및 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3) 긴급 작업중지 구역에서 장비를 작동하여야 할 경우, 장비와 관련 있는 상급자가 해당 장비작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.
- (4) 긴급 작업중지를 요청한 사람이 직접 통제실에 해제요청을 할 때까지 통제실은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한다.
- (5) 악천후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동안 통제실은 전체 안전을 위하여 긴급 작업중지를 발효할 수 있다.
- (6) 작업중지 구역에 있는 보행자나 작업자는 지속적으로 통제실과 무선연락을 하여야 한다.

8.4 화물집하장(CFS) 작업안전

8.4.1 화물집하장(CFS)내 화물입고 작업

- (1) 위험화물 작업 시 창고장은 작업자에게 화물의 특성, 작업방법 및 작업요령, 안전조치 사항 등을 설명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팔렛트를 깔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작업하여야 한다.
- (3) 트럭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화물을 묶은 밴드가 끊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.
- (4) 팔렛트 위에 쌓여진 화물은 필요시 밴드 등을 이용하여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(5) 팔렛트화된 화물은 반드시 한 팔렛트씩 입고하여야 한다.
- (6) 화물을 내리거나 팔렛트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화물차량이나 지게차의 주행을 수시로 살피면서 작업하여야 한다.
- (7) 팔렛트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적재화물의 높이를 2 m 이내로 하여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

- (8) 유리제품, 전자제품 및 중량화물을 2 단 이상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9) 화물포장에 표기된 지시대로 화물을 적재하고, 서로 중량이 다른 경우에는 중량 화물과 포장이 견고한 화물을 최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.
- (10) 입고 작업장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가 입회하고, 경보장치를 지참하여야 한다.
- 8.4.2 화물집하장(CFS)내 화물 장치작업
- (1) 화물집하장(CFS) 내 장치화물은 「관세법」에서 정한 보세화물 규정의 내용대로 장치하고, 보관하여야 한다.
- (2) 벌크(Bulk)화물로 창고 내 입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하고 화물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3) 창고 내 장치화물은 팔렛트 별로 3 단 이상 장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원형화물(드럼 등)의 경우 적재 시 상부측에 전도 방지용 띠 또는 밴드 등을 이 용하여 화물이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자는 컨테이너 적·출 작업 시 지게차의 주행을 수시로 살피면서 작업하여야 한다.
- (6) 12 m(40 ft)용 도로섀시에 6 m(20 ft)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트랙터가 섀시를 연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, 지게차 포크는 짧은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7) 재검수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시킨 후 수행하여야 한다.
- (8) 벌크화물의 적출·입시 작업 지게차 이외에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며, 검수시 등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한 후 출입하고,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9) 창고장 및 작업지휘자는 경보장치를 소지하고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.
- (10) 창고의 에이프런 끝단부에 황색 교차실선을 도색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.

8.5 그 밖의 특수작업 안전

8.5.1 위험물 하역작업

- (1) 위험화물 작업과 관련한 소방시설, 안전장구, 게시판 및 표지판은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화물의 충격, 전도 및 화물붕괴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3) 집하장의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사전에 선사 또는 화주에게 반입 통제 및 반출을 알려야 한다.
- (4) 보관된 위험화물의 유형별 파악과 인화성물질, 가연성물질 등 내용물 누출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지휘자는 명세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직 반출·입 및 위험화물 집하장에 보관토록 선별 조치하여야 한다.
- (6) 위험물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(IDMG Code)의 Class1(화약류), Class2(가스류), Class6.2(전염성물질), Class7(방사능물질)은 직 선적 및 직 반출시켜야 하며, 양하 시 트레일러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작업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컨테이너를 우선 작업한다.
- (7) 작업지휘자는 적하목록에 의하여 위험화물임을 장비 운전자(크레인, 트레일러)에 게 알려 주어야 하고, 트레일러에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도록 하며, 작업 주변의 차량 및 관련자 이외 작업자들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8) 위험화물 취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위험물 작업 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9) 이상발견 시 즉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,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(10) 적·양하 시 작업현장 주변에서 흡연, 용접, 절단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과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11) 집하장내 냉동위험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(12)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는 국제해상 위험물규칙(IDMG CODE)과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내용에 따라, 비상조치 및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
8.5.2 철도운송 컨테이너 작업

- (1) 화차의 출입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, 작업자 및 차량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여 야 한다.
- (가) 상·하차 작업 시 화차의 록킹 핀의 잠금과 풀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작동 불능 시에는 즉시 철도 관계자에게 조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- (나) 철도운송 작업자는 화차 밑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다) 철도운송 컨테이너 작업자 외에는 록킹 핀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라) 철도운송 컨테이너 작업자 외에는 화차 및 컨테이너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9. 본선작업 시 안전

9.1 작업 전 준비사항

- (1) 본선 작업지휘자는 현문사다리 발판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.
- (2) 이동식 크레인 주변에 왕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작업지휘자가 통제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3) 섀시의 스프레더 교체, 로드-핀을 장착할 때에는 가능한 차량 통행로에서 벗어나 작업을 하거나, 작업할 장소의 한쪽 도로를 안전방책으로 차단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.
- (4) 작업지휘자는 컨테이너 적·양하용 슬링 등 하역도구 및 보조도구를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.
- (5) 크레인 및 데릭 등 하역장비가 정격하중과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선박적부도 등을 준비하고, 하역관련 서류 및 작업순서에 대하여 하역회사의 책임자, 작업지휘자 및 선박관계자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에 따른 적정인원이 편성되었는지를 작업지휘자가 확인하여야 한다.

9.2 선박 출입설비 안전

- (1) 현문사다리는 본선에 부착된 국제규정에서 정한 적정한 것이어야 하며, 선박의 형태에 따라 현문사다리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폭 55 cm 이상, 양측에 높이 82 c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한 갱-웨이(Gang-way)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현문사다리는 하역 및 조수간만의 차 등에 의하여 건현 등 선박의 상태가 변화하더라도 부두 안벽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, 선박의 불워크(Bulwark) 상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3) 현문사다리 또는 갱웨이(Gang-way) 설치 시 선박을 묶어두는 부두 계류설비인 비트(Bitt) 등이 장애물에 지장을 받을 경우, 보조사다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.
- (4) 야간에는 출입설비의 상단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현문사다리 및 갱웨이(Gang-way) 하부에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하며, 그물망은 본선 불워크(Bulwark)와 안벽을 연결하는 구조로 현문사다리 하부를 감싸는 방식으로 하고, 상·하부 플랫트 폼에서 1 m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치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6) 선박 출입설비를 경유하여 작업자는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을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.
- (7) 선박 출입설비 근처에는 유사 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한 구명환(구명줄이 부착 된 것)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(8) 출입설비와 연결된 본선 통행로 상의 각종 아이플레이트(Eye plate) 등 돌출부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(9) 크레인의 탑승설비 또는 하역도구인 네트슬링(Net sling) 등을 이용한 선박 출입은 금지하여야 한다.
- (10) 현문사다리 승강 시에는 하중을 고려하여 2답단에 1명으로 승강을 제한한다.

9.3 갑판 적재작업 시 안전

- (1) 컨테이너 적재단 위로의 진입은 다음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(가) 랏싱 케이지
 - (나) 스프레더(랏싱 작업자 운반용으로 설계된 것)
 - (다) 이동식사다리
- (2) 랏싱 케이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낙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야 한다.
 - (가)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나) 프레임 등 철구조물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.
 - (다) 철망 등으로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라) 내부에 랏싱 콘과 공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(마) 정격하중을 표기하고, 탑승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.
 - (바) 권상용 슬링은 안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 - (사) 케이지 내부 철망의 프레임과 연결부는 마모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.

- (아) 주기적인 검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고,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(3) 스프레더는 다음 기준에 따라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져야 한다.
 - (가) 작업대를 타고 내릴 때 필요한 안전한 사다리와 손잡이를 갖추어야 한다.
 - (나) 승강 위치에는 미끄러짐이나 걸려 넘어지는 위험요인이 없어야 한다.
 - (다) 승강 부분에는 최소 1.2 m 높이의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라) 스프레더 위에 랏싱 콘이나 다른 하역도구를 담는 적재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 시 랏싱 케이지나 스프레더에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5) 랏싱 케이지나 스프레더에 승강할 때에는 선박의 불워크(Bulwark)에서 승강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(6) 케이지나 스프레더 사용이 쉽지 아니한 경우,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위나 작업하고자 하는 화물위치로 접근하여야 하며, 이동식사다리는 3단 이상의 컨테이너를 승강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7) 컨테이너 지붕 위나 화물의 상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한다.
 - (가) 반드시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하고, 케이지나 스프레더의 고정지점에 안전 대를 고정시킨 후 작업한다.
 - (나)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안전화를 신는다.
 - (다) 랏싱 도구는 한 손에 하나씩 운반한다.
 - (라) 바람이 불 때에는 주의해서 작업을 하되, 바람이 심해지거나 갑작스런 돌풍이 불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(마) 부두의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0 m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.
- (8) 랏싱 콘 부착 및 해체작업

- (가) 랏싱 콘을 푼 후에는 바스켓 안에 넣고, 갑판 또는 컨테이너 지붕 위로 떨어 뜨리거나 던져 올려서는 아니 된다.
- (나) 랏싱 콘을 푼 후에는 바스켓을 랏싱 케이지 안으로 옮기고, 갑판 쪽으로 크레 인을 사용하여 내려야 한다.
- (다) 상부의 랏싱 콘을 부착하거나 해체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낙하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부작업자는 옆으로 컨테이너 두 개 폭 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한다.
- (라) 와이어로프 슬링 및 랏싱 로드 등 각종 랏싱도구는 반드시 선박의 지정된 위 치에 두여야 한다.
- (마) 갑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갑판에서 랏싱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랏싱작업이 병행될 경우 크레인 작업 컨테이너와 랏싱작업을 해야 할 컨테이너 사이에는 최소 두 개의 컨테이너 사이를 두어야 한다.
- (바) 턴버클에는 랏싱에 필요한 충분한 긴장력이 부여되어야 하며, 지나치게 조이 지 않도록 조임 토크 값에 대한 훈련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사) 랏싱작업은 최소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 시를 대비하여야 한다.
- (아) 랏싱 콘을 해체한 후에는 각각의 콘-박스에 담아 두어야 하며, 해치커버 위나 선박의 통로에 두지 않도록 한다.
- (자) 개방된 해치 또는 개구부 옆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작업특성 상부득이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추락방지장치(안전블록 등)를 주변의 고정시설에 견고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차) 지상에서 랏싱 콘 박스는 크레인과 차량 주행로, 크레인의 고정 위치에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.
- (카) 랏싱 콘이 컨테이너의 하부에 부착되어 인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낙하에 대비하여 신호수 또는 작업지휘자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.
- (타) 랏싱작업은 전문적인 랏싱작업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
- (9) 그 외에 고소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추락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위의 모서리에 서 있지 않아야 한다.
 - (나) 작업하는 컨테이너의 바로 옆 컨테이너에는 서 있지 않아야 한다.
 - (다) 랏싱 콘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사이에 서 있지 않아야 한다.
 - (라)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위에 서 있지 않아야 한다.

- (마) 작업 중인 컨테이너와 작업자 사이에는 최소한 한 개의 컨테이너 길이에 해당 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바) 컨테이너 상부에서 주변의 컨테이너 상부로 이동할 경우 사전 추락의 위험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며,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
- (10) 스프레더 작업이 어려운 개방형 컨테이너는 로드 핀으로 작업하여야 한다.
- (11) 해치커버를 운반하는 경우 모든 해치커버 상의 랏싱도구는 보관함에 보관하고,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12) 부두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권상될 경우 컨테이너 하부 틈새에 돌 등 이물질이 끼어있는지를 확인하고, 끼어있는 경우 작업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.
- (13) 로드-핀 또는 와이어로프 슬링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율 5 이상을 확보하고, 걸림 각도가 60 도 이내가 되는 충분한 길이의 와이어로프 슬링을 사용하여야한다. 또 와이어로프 슬링의 고리부 편입(Eye splice)은 슬링의 스트랜드를 각각의 다른 스트랜드에 총 5 회 이상 꼬아 넣어져야 한다.
- (14) 컨테이너의 와이어로프 슬링걸이 작업 시에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의 컨테이너만 작업하여야 한다.
- (15) 컨테이너가 권상되기 전 컨테이너의 문 열림 등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6) 사용한 하역도구는 하역도구 창고에 정리하고, 이상이 있는 것은 작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.
- (17) 로드-핀 삽입 시, 슬링을 충분히 길게 하여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, 사다리 및 안 전대 등을 이용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18) 수동 스프레더 또는 반자동 스프레더 사용 시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안전율 10 이 상을 유지하고, 탑승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체인걸이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
B - 7 - 2015

9.4 홀드(선창) 출입 시 안전

- (1) 홀드로 출입 시에는 본선에 설치된 고정사다리를 사용한다.
- (2) 케이지가 스프레더에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해당 작업자는 반드시 케이지에 안전대를 고정 시키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3) 홀드에서 컨테이너를 적하하거나 양하할 때 작업자는 스프레더 밑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천막(Tarpaulin)이 덮여져 있는 상부개방 (Open top) 컨테이너와 플랫트-랙에 실린 화물 상부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5) 이동식사다리는 다른 안전한 접근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각도, 미끄럼방지장치, 사다리 위·아래 부분 등에 대한 고정장치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6) 각각의 홀드 출입통로에는 출입이 쉽도록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.

9.5 홀드작업 시 안전

- (1) 갑판 아래에서 작업하는 경우, 크레인 운전자가 작업진행 상황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전자와 서로 신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선통신 설비를 소지하여야 한다.
- (2) 각각의 홀드 내 작업장의 경우, 작업점의 밝기는 75 룩스(Lux)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홀드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와 다른 높이의 컨테이너를 이동 시에는 안전한 사다

B - 7 - 2015

리를 사전에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.

- (4) 컨테이너 콘 등 랏싱도구를 사용하여 홀드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, 크레인의 작업반경 외측에서 작업하여야 한다.
- (5) 셀-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치코밍 상단부 또는 선체 프레임 등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지휘자가 통제하여야 한다.
- (6) 홀드의 벤치 데크(Bench deck)에서 뛰어내리거나 적재된 높이가 다른 주변의 컨 테이너 위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.

9.6 선박 비상조치 시 안전

- (1) 작업지휘자 및 모든 작업자는 선박의 비상조치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.
- (2) 작업지휘자는 선박에 근무 중인 인원 명단을 작성 보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.
- (3) 선박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응급치료를 요하는 사고발생 시, 작업지휘자는 육 상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.
- (4) 선박화재 발생 시에는 전원이 안전한 통로를 통하여 침착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가 지휘하여야 하며, 상황종결을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다시 승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9.7 하선 시 안전

(1) 교대 후에는 선상에서 사용하였거나 들고 있었던 도구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지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2) 현문 사다리나 갱-웨이를 출입할 때에는 머리 위로 통과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피하여 이동한다.
- (3) 작업지휘자는 하선하기 전에 선상 인원들이 모두 하선하였는지를 확인한다.
- (4) 컨테이너의 스틱 등 랏싱도구의 휴대 시에는 앞뒤 작업자와의 간격을 최소 2 m 이상 두어야 한다.
- (5) 하선 작업자는 승선 시와 같은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, 현문사다리가 올라 가면 뛰어내리지 말고, 본선 당직사관에게 원위치로 하강토록 요청하여야 한다.

9.8 본선작업 운영요원의 준수사항

(1) 운영요워 공통

- (가)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등 운영요원은 무선통신 설비를 소지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 전 모든 작업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작업절차 및 방법을 자세히 알고,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다) 작업 전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을 수행한다.
- (라) 작업지휘자는 해치포맨 및 신호수의 역할과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.

(2) 작업지휘자

- (가) 작업 전 적하하거나 양하하는 서류 및 화물에 대한 특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본선 작업자에게 작업 전 교육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- (다) 본선 현문사다리 밑에 안전망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라) 작업 전 본선설비와 도구 및 선상의 전반적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마) 신호수 및 작업에 투입된 모든 인원에 대하여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바) 신호수를 가장 안전하고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(사)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것은 없는 지를 확인

하여야 한다.

- (아) 일반선을 컨테이너선으로 개조하거나 홀드를 보수한 선박의 경우 홀드가 열린 해치와 해치 사이를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불가피하게 통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걸이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자) 본선 각 작업자의 작업진행이 올바른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차) 해치커버를 열고 닫을 때 선박 설비상의 장애와 고정핀의 풀림과 잠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카) 강풍, 폭우, 폭설 및 짙은 안개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.
- (타) 작업 중 선박설비와 화물의 이상 및 본선이 종경사(Trim) ± 3도, 횡경사(List, heeling) ± 6도 이상으로 기울어지거나, 파도에 의해 흔들려 사고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지휘계통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파) 특수 컨테이너 작업 시 화물의 형태와 적재된 주변을 세밀히 검토하고, 중량 및 편하중 등을 감안하여 슬링 포인트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(하) 특수 컨테이너 작업 시 화물의 중량(용적)과 중심, 적재위치 및 주변상황 등을 확인하고 스프레더, 로드-핀 등 적절한 하역도구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거) 특수 컨테이너는 선적지의 작업 기록서류 등을 본선 관계자로부터 확보하거나 선적작업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(너) 플랫트랙 컨테이너 화물작업 시 선수, 선미쪽 각 1명씩 양쪽에서 정확하게 로 드-핀을 장착하고, 서서히 20~30 cm 정도 권상한 후, 이상이 없으면 신호에 따라 서서히 권상하도록 한다.
- (더)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적절한 응급조치 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(러) 작업지휘자는 선박에 설치된 고정식사다리의 균열 등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점 검하여야 한다.
- (머) 개방된 홀드로 진입할 때에도 작업자가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진입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(버) 작업에 대하여 규정된 일정한 신호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, 그 내용을 모든 신호수에게 통일시켜야 한다.

(3) 신호수

(가) 신호는 가장 안전하고 잘 보이는 곳에서 한 사람이 표준 신호요령에 따라 신

호하고, 무전기 또는 수신호를 위한 호각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- (나) 크레인 주변으로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, 크레인의 앞뒤 또는 크레인 가까이에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검수원, 랏싱-맨, 승조원 등 작업자가 크레인 본체에 기대지 않도록 통제하여 야 한다.
- (라) 크레인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마) 권상 또는 권하 되는 컨테이너 밑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며, 그 지역에 외부인 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바) 하역도구가 조작된 후에는 반드시 안전한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운전자에게 신호하여야 한다.
- (사) 적하 또는 양하 작업 시 크레인의 스프레더가 컨테이너의 코너-캐스팅에 정확히 착상되었는지 여부 또는 섀시에 정확히 상차되었는지를 확인하고, 작업자의 대피상태를 확인한 후 차량의 출발신호를 하여야 한다.
- (아) 컨테이너 및 해치커버를 작업하기 전에 트위스트 록의 해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.
- (자) 선체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, 즉시 작업지휘자 및 본선 선장에게 보고한다.
- (차) 화물 또는 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상작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지휘자에게 즉시 보고한다.
- (카) 개방된 홀드의 해치와 해치 사이의 코밍으로 통행하거나 그 위에서 신호하여 서는 아니 되며, 대피지역을 먼저 선정한 후 신호를 하여야 한다.
- (타) 크레인의 붐 권하와 주행 시에는 선체와의 충돌 여부, 주변의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신호하여야 한다.
- (파) 해치커버를 양하할 때 크레인 주변 및 이동구간에 작업자 또는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하) 양하작업 전에 본선작업 서류를 완전히 파악하고, 20 ft(6 m) 또는 40 ft (12 m) 컨테이너 구분을 크레인 운전자에게 사전에 신호하여야 한다.
- (거) 신호업무 수행 시에는 신호 이외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너) 작업 시 적하 또는 양하 계획서류를 지참하고, 화물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 한다.
- (더) 흔들리는 컨테이너를 손으로 잡고 흔들림을 줄이거나 위치를 잡아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B - 7 - 2015

(4) 위험물안전관리자

- (가) 선사로부터 위험물 적화목록을 인수하여 위험물 등급에 따라 직상차 또는 장 치 화물별로 분류 조치하여야 한다.
- (나) 목록에 위험물 표시, 장치 위치, 직 반출표시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하역작업 전 작업근로자에게 위험물 종류별 취급요령, 응급 처리요령, 안전장 구 및 소화기구 사용법 등 취급상 주의사항을 교육시켜야 한다.
- (라) 국제해상 위험물(IMDG Code)을 자세히 알고,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(마) 작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험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0. 부두에서의 하역장비 작업안전

10.1 섀시 운전자

(1) 작업 전

- (가) 크레인 주위의 장애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운전실 조작레버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다) 각종 와이어로프의 이탈 유무와 작업 반경 내의 장애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라) 작업개시 전에는 본선 주변의 안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이나 사이렌을 울려야 한다.
- (마) 장비 가동 전 시험운전을 거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작업을 실시한다.

(2) 작업 중

- (가) 운행 중 불규칙적인 작동상태와 소음, 이음, 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(나) 적하 또는 양하 작업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(다)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경우 약 20 cm 높이에서 일단 정지 후 화물상태 및 위치를 확인하여 작업하는 스토핑(Stopping)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라) 권상 또는 권하, 회전 시 컨테이너의 흔들림은 최소가 되어야 하며, 마지막에 는 정상적인 운전에 의한 감속정지를 하여야 한다.

- (마) 컨테이너를 비스듬히 당기거나 끌지 말아야 한다.
- (바)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컨테이너는 작업지휘자가 사전 작업을 중지하고 선사에 계통보고를 한다.
- (사) 선적작업 시 차량 위의 컨테이너에서 사용하였던 스프레더 플리퍼(Flipper)를 다시 올릴 경우 선박의 홀드 입구나 작업할 위치의 4~5 m 위에서 작동시켜 야 한다.
- (아) 적재된 컨테이너 위로 스프레더나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때에는 최상부 컨테이너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고, 스프레더와 컨테이너를 이동시켜야 한다.
- (자) 화물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수의 신호에 의해 작업하여야 하다
- (차) 탑승설비를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, 스프레더 위에 콘을 싣거나 작업자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카) 본선에 양화장치가 있을 경우 크레인 붐 또는 스프레더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타) 크레인 본체 및 보조설비가 본선 또는 장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파) 화물을 20 cm 정도 권상하여 화물의 편하중을 확인한 후, 스프레더의 중심을 맞추어 권상하여야 한다.
- (하) 본선 갑판 위 2단 및 3단 작업시 랏싱-맨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거) 밀물, 썰물 때에는 본선에 적재된 컨테이너 또는 장애물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너) 해치 커버를 닫을 때에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더) 순간풍속이 초속 20 m 이상의 강풍이나 돌풍이 발생한 경우 작업 중지 후 지 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(러) 계기판과 표시램프 등은 규칙적으로 살펴보고 기기의 오작동, 과중량 상태 또는 스프레더의 불안정 결속상태에 대한 경고신호를 확인한다.

(3) 작업 후

- (가) 모든 하역설비 및 장비를 원 위치에 두고,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한다.
- (나) 조작레버를 중립에 놓고, 모든 스위치를 꺼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다) 아우트리거 및 모든 텔레스코핑 장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동하여야 한다.
- (라) 이동 시 신호수 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(마) 원위치 후에 적정한 용구 또는 도구로 고정하여야 한다.

10.2 트랜스퍼 크레인 운전자

(1) 작업 전

- (가) 고임목 제거, 냉각수 및 타이어 공기압과 각종 계기 및 스프레더를 점검하고 와이어 드럼에서 와이어로프 이탈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리미트 스위치가 탈락 혹은 손상된 곳을 파악 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(다) 작업 전 트롤리 호이스트의 권상, 권하 및 주행을 2~3회 반복하는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.
- (라) 작업을 교대하는 경우에는 운전실에 연락하여 크레인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, 교대하여야 한다.
- (마) 운행하기 전에 경고 방송이나 사이렌을 울려서 주위의 안전 및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.

(2) 작업 중

- (가) 주행할 때 트롤리를 뒤쪽 끝에서부터 약 1 m 정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, 시 야가 종·횡방향으로 가장 양호한 곳에서 주위상황을 주시하면서 주행하여야 한다.
- (나) 주행 시 교차로 지점에서는 반드시 주변의 장애물, 차량 등을 확인한 후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.
- (다) 주행 시에는 경고방송이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행하여야 한다.
- (라) 컨테이너와 접촉될 위험이 없도록 스프레더의 위치를 확인한 후 주행하여야 하다.
- (마) 주행 유도선을 따라 정확히 주행하여야 한다.

B - 7 - 2015

- (바) 이동 시에 스프레더가 다른 컨테이너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까지 권 상하여야 한다.
- (사) 컨테이너 권상 시 20 cm 정도 들었다가 정지하여 화물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권상한다.
- (아) 다른 작업자나 보행자가 발견되면 작동을 멈추고 경고 사이렌을 울려야 하며,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자) 컨테이너 적재 시에는 코너캐스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.
- (차) 40 ft(12 M) 컨테이너 위에 20 ft(6 M) 컨테이너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카) 작업 재개 전에는 호이스트와 트롤리를 2~-3회 앞뒤로 서서히 작동한 후, 작업하여야 한다.
- (타) 초속 20 m 이상 강풍(돌풍)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 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.
- (파) 크레인 레그에 폐쇄회로 TV를 부착하지 않은 크레인은 사전 주행로상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운전하여야 한다.
- (하) 권상, 권하, 주행 및 횡행 시 컨테이너의 흔들림은 최소가 되도록 운전하여야 하며, 마지막에는 정상적인 운전에 의한 감속정지를 하여야 한다.

(3) 작업 후

- (가) 작업 후 고박 위치까지 이동하여 고박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 후 레버를 중립에 놓고 모든 스위치를 꺼야 한다.
- (다) 작업 후 모든 창문 및 도어는 폐쇄시켜야 한다.

10.3 지게차 및 리치스태커 운전자

- (1)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을 정리정돈 한 후,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충분한 길이의 컨테이너 작업용 포크 등 적합한 장구를 부착하지 아니한 지게차 는 컨테이너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3) 컨테이너에서 적출·입 작업 시 마스트 상단과 컨테이너 탑 레일 부분의 간격을 확인 후 진입하여야 한다.

- (4) 포크 끝단으로 컨테이너를 권상하거나 끌지 말아야 한다.
- (5)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포크를 가능한 지면에 가깝게 내려 운행하여야 한다.
- (6) 지게차에 적재하는 화물은 편하중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.
- (7) 경사진 곳의 운행 시에는 전진운전으로 올라가고 후진으로 내려와야 하며,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.
- (8) 리치스태커는 스프레더 연결상태 등 하역설비의 확인 및 각종 전기, 유압장치 등의 작동부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에 투입한다.
- (9) 리치스태커 운전자는 장비의 프레임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생김으로써 작업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는 챠량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.
- (10) 리치스태커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, 컨테이너를 끌거나 밀어내는 등 불 안전한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